

##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

채권자 〇〇〇

00 00군 00면 00길 00(우편번호 000-000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채무자 ◇◇◇

○○ ○○군 ○○면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신 청 취 지

- 1.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②, ④, ⑤, ⑥, ②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통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의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하라.
- 2. 채무자가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○○지방 법원 ○○지원 소속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.
- 3.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⑦, ⓒ, ⓒ, ②,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채권자, 채권자가족들 및 차량 등이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
  - 가. 채권자는 OO OO군 OO면 OO리 OO 대지 605㎡ 및 그 지상에 주택

#### 2.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

#### 가. 도로형성경위

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②, ④, ④, ④, ②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도로(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 함)는 최초 20년 이상 폭 1m 이내의 소로로 형성되어 사용되어지다가 약 10여년전 신청외 ■■■가 광산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폭 3m의 도로로 확장한 뒤채권자 및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.

#### 나.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

채권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와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채권자가 밭을 경작하고, 장을 보는 등 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, 채무자 는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이 사건 도로 사용을 방 해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(소갑 제4호증 도로사 진 참조),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 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.

또한, 토지의 지형적,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를 보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채권자가 소유한 각종 농지의 현재 이용상황으로도 경운기 및 소형트럭 등이 운행되어질 수 있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필요하며, 채권자가 위와 같은 용도로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현재 임야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곳 소재 ○○ 토지의 이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, 같은 곳 소재 ○○○의 토지이용에 대한 수인의 범위를 넘는 제한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.

그리고 위 도로는 채권자외 5인이 각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

#### 3. 채무자의 통행방해사실

가. 채무자는 단지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이 사건 도로에 흙, 암석 등의 방해물을 설치하여 경운기 및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으며(소갑 제5호증의 1, 2 각 사진 참조) 채권자의 방해물제거청구에 대하여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

- 나. 또한, 채무자는 20○○. ○.경부터 ○월까지 별지도면 표시 때부분의 도왕에 대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여(소갑 제5호증의 3, 4 각 사진조) 채권자로서는 달리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작한 야채를 판매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당시 야채 운송업을 하던 신청외 ●●●가 중재를 하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토지사용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금 1,000,000원을 신청외 ●●●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, 더불어 위 도로의 통행방해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, 위 금전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바, 다만 채무자가 위 도로상의 통행방해를 위 금전지급 후 2일이 지나자 중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.
- 다. 현재 채무자의 통행방해사실에 의하여 채권자 및 채권자가족 외에도 위 도로를 통하여 경작지에 이르는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, 특히 채권자는 밭을 경작하는 이외에도 장을 보거나 비료를 구입하는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.

#### 4. 결 론

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도로를 통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공로에 차량을 통하여 출입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, 채무자가 주장하는 우회통로를 정비하는데는 신청외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 명백하므로 채권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, 따라서 채무자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②, ④, ⑤, ⑥, ②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흙, 암석등의 방해물은 즉시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며,이 사건 도로는 채권자가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물권적 청구권의 권능인 채무자의 침해행위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.

5. 한편, 이 사건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 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

주민등록표등본(채권자)

1.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

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

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소갑 제4호증의 1, 2

1.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방해물사진

1. 소갑 제6호증

우회도로 사진

지적도등본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

1. 토지대장등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2000. 0. 0.

위 신청인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



# 도 면

	채권자의	
	거 주 지	

	HAIAI 괴취비이 따느 디트이 테						
제출법원	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	ələlulə	MWW.K				
	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	관 런 법 규	민사집행법 제300조				
	원	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목록 5부정도 첨부)						
불복절차 및 기간	(채권자)						
	·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301조,						
	제281조 제2항)						
	·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 민사소송법 제444조)						
	(채무자)						
	·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3조), 본안의 제소명령(민사						
	집행법 제301조, 제287조)						
	·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						
	하고 취소 ·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. 가처분명령이 발령						
	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						
	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						
, ,	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				
비 용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		
기 타	·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						
	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						
	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						
	개설할 수 있음.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.						
	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(민법 제219조).						
	·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						
	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						
	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,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						
	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, 최소한 통행권						
	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, 어느 정도를 필						
	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,						
	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, 부근의 지리상황,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						
	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(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2다9202 판결).						

## ※ 집행절차

				보증보험사와 지급 보증위탁계약체결	
가처분신청	→ 2~3일후	담보제공명령서 수령(공탁명령)	→ 5일내	<ul><li>※ 지참서류등</li><li>1. 가처분신청서사본</li><li>2. 주민등록표등본</li><li>3. 담보제공명령서</li><li>4. 도장</li></ul>	$\longrightarrow$



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(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